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30878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redacted]시
[redacted]

3. [redacted]

소송대리인 C

4. D기금
[redacted]

5. [redacted]

6. [redacted]

소송대리인 E, F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redacted] [redacted]시 G 전 2,958㎡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231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redacted] [redacted]시 G 전 2,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redacted]시는 [redacted]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1267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8. 1. 4. 접수 제27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같은 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233319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D기금은 같은 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865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5. 11. 18. 접수 제4225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같은 등기소 2017. 7. 11. 접수 제2336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은 2013. 10. 10. I으로부터 그 소유의 [redacted]시 G 전 3,4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도로부지로 사용되던 469㎡를 제외한 나머지 2,959㎡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매매대금을 완불한 원고와 H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3,428분의 1,479.5 지분씩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I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등기와 청구취지 기재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I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4314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I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취지의 같은 법원 2017. 12. 15.자 2017머13898호 조정결정이 내려져 2018. 1. 6.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2018. 3.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redacted]시 J 전 470㎡로 분할된 후, 2018. 3. 30. 이 사건 토지의 I 지분(3,428분의 469) 전부가 원고 등에게 각 3,428분의 234.5 지분씩 이전등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으므로, I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 주식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사 B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만의 공유가 되었으므로, I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 및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뒤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로 현물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만의 공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유효를 주장함은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뿐 위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05

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